



제427회국회(임시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 보수총액을 신고한 것으로
간주 〉

■ 김주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705호)

2025. 7.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전문위원 한석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 보수총액을 신고한 것으로 간주	3

I. 제안경위

2025년 1월 22일 김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1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주는 현행 「소득세법」에 따라 매년 2월말까지 소속 근로자의 소득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고 있음에도 매년 3월 15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한 소득자료를 근로복지공단에 중복적으로 제출하고 있음.

이에 국세청의 소득자료의 연계를 통해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보수총액신고를 국세청에 제출한 소득자료 제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장의 신고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행정기관 상호 간에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민원인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하지 않게 되어 있는 「전자정부법」에도 위반된다는 의견이 있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주로부터 소득자료를 신고받지 않고 국세청 소득자료를 제공받아 보험료를 정산하도록 법령이 개정되었음.

따라서 사업장의 신고 부담을 완화하고 전자정부 실현으로 국가행

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업주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보수총액신고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는 「소득세법」상 간이지급명세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10).

1.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 보수총액을 신고한 것으로 간주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 3 –

② ~ ⑧ (생략)	<u>는 공단에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u> ② ~ ⑧ (현행과 같음)
------------	--

나. 검토의견

현행법상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의 보수총액에 각 보험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되고, 근로자 또는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고용보험료와 산업재해보상보험료는 매월 부과됨.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월별보험료는 월평균보수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되는데, 매년 3월 15일까지 사업주가 전년도에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한 보수총액을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고 함)에 신고하면 공단이 정산하여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부족액을 징수함.

한편, 사업주는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의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지급명세서를 매년 2월 말일까지 과세관청에 제출해야 하는데, 사업주는 공단과 과세관청에 소득자료를 이중으로 제출하는 부담이 발생한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개정안은 소득세법에 따른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자료)를 과세관청에 제출한 경우에는 공단에 보수총액 등을 신고한 것으로 간

주하려는 것으로, 사업주의 행정·사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여짐.

특히, 전자정부법은 행정기관 등의 장으로 하여금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다른 행정기관과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하면서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내용의 정보를 따로 수집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¹⁾, 개정안은 전자정부법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임.

다만, 간이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사항의 누락이나 오류 등으로 보수총액 산정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사업주에게 보수를 신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봄.

가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은 사용자가 전년도 직장가입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에 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건강보험료 산정에 필요한 보수월액을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면서도 간이지급명세서의 누락·오류 등으로 보수월액 산정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로 하여금 보수월액에 관한 정보를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므로²⁾, 이를 참고할 수

1) 「전자정부법」 제36조(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필요로 하는 다른 행정기관등과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다른 행정기관등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행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내용의 정보를 따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 ⑥ (생략)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5조(보수월액 산정을 위한 보수 등의 통보) ① 사용자는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보수월액의 산정을 위하여 매년 3월 10일까지 전년도 직장가입자에게 지급한 보수의 총액(법 제70조 및 이 영 제33조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서 가입자별로 1월부터 12월까지 지급한 보수의 총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직장가입자가 해당 사업장·국가·지방자치단체·사립학교 또는 그 학교경영기관(이하 “사업장등”이라 한다)에 종사한 기간 등 보수

있겠음.

고용노동부는 개정안에 대하여 사업주의 신고 부담을 경감시킬 것으로 기대되나, 국세청에 제출된 소득자료의 기재사항이 누락·오류 등의 사유로 보험료 부과에 필요한 소득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주의 별도 보수 신고 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38

월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70조제3항 후단의 적용을 받는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보수월액 산정을 위하여 그 사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때까지 사용·임용 또는 채용한 모든 직장가입자(제3호의 경우에는 해당 직장가입자를 말한다)에게 지급한 보수의 총액 등 보수월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이 폐업·도산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사립학교가 폐교된 경우
3. 일부 직장가입자가 퇴직한 경우

③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소득세법」 제164조의3제1항에 따라 전년도 직장가입자에게 지급한 보수의 총액에 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 따른 통보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단이 해당 간이지급명세서에서 기재 사항의 누락·오류 등으로 인하여 보수월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